#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 1
1. 개관 ..... 4
1.1. 개요 ..... 4
1.1.1. 암의 개념 및 종류 ..... 4
1.1.2. 암의 진단 및 치료 ..... 5
1.2. 암센터 ..... 6
1.2.1. 암센터 이용하기 ..... 6
1.3. 암 대비하기 ..... 7
1.3.1. 암 대비하기 ..... 7
2. 암 예방하기 ..... 9
2.1. 암 예방하기 ..... 9
2.1.1. 암의 예방 ..... 9
2.2. 암검진 받기 ..... 10
2.2.1. 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 10
2.2.2. 암검진 비용 지원 ..... 12
3. 암환자에 대한 지원 ..... 14
3.1. 의료비 지원 ..... 14
3.1.1. 보건소 의료비 지원 ..... 14
3.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 18
3.2. 재가암환자 지원 ..... 18
3.2.1. 재가암환자 지원 ..... 18
3.3. 말기암환자 지원 ..... 18
3.3.1.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 18
3.4. 그 밖의 지원 ..... 20
3.4.1. 생활비 등 지원 ..... 20
3.4.2. 간병휴직 등 ..... 22

# 1. 개관

## 1.1. 개요

### 1.1.1. 암의 개념 및 종류

#### 암의 개념

##### 암의 개념

▪ 암(cancer)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암은 주위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장기로 퍼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암은 억제가 안 되는 세포의 증식으로 정상적인 세포와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파괴하기에 그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 흔히 암이라는 용어와 함께 혹이나 종양 등의 용어가 사용 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혹은 비정상적인 체내의 덩어리를 가리키는 말로 의학적으로는 종양성 병변에 해당합니다.

▹ 종양은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 몸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새롭게 자라난 덩어리로서 정상조직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뉩니다.

√ 양성종양은 비교적 서서히 성장하며, 신체 여러 분위에 확산·전이되지 않고 제거하여 치유시킬 수 있는 종양을 말합니다.

√ 이와 달리 악성종양은 빠른 성장과 침윤성(파고들어 퍼져나감) 성장 및 체내 각 부위에 확산·전이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즉,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비교[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특성 | 양성종양 | 악성종양 |
|---|---|---|
| 성장속도 | ·천천히 자람<br>·성장이 멈추는 휴지기를 가질 수 있음 | ·빨리 자람<br>·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뭄 |
| 성장양식 | ·점점 커지면서 성장하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br>·주위 조직에 대한 침윤은 없음 |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면서 성장함 |
| 피막 형성 여부 | ·피막이 있어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침윤하는 것을 방지함<br>·피막이 있으므로 수술적 절제가 쉬움 | ·피막이 없으므로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이 잘 일어남 |
| 세포의 특성 | ·분화가 잘 되어 있음<br>·분열상은 없거나 적음<br>·세포가 성숙함 | ·분화가 잘 안 되어 있음<br>·정상 또는 비정상의 분열상이 많음<br>·세포가 미성숙함 |
| 인체에의 영향 | ·인체에 거의 해가 없음 | ·항상 인체에 해가 됨 |
| 전이 여부 | ·없음 | ·흔함 |
| 재발 여부 | ·수술로 제거 시 재발은 거의 없음 | ·수술 후 재발 가능함 |
| 예후 | ·좋음 | ·종양의 크기, 림프절 침범 여부, 전이 유무에 따라 달라짐 |

#### 암의 종류

##### 암의 종류

▪ 암은 인종, 국가, 성별, 나이, 생활습관, 식이습관 등에 따라 다양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갑상선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이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갑상선암: 목의 앞쪽에 있는 갑상선(甲狀腺, thyroid)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중 악성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 폐암: 폐는 심장과 함께 흉강(胸腔, 가슴 안)을 채우고 있는 장기로서,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 위암: 소화기관인 위는 위장관(胃腸管) 중 가장 넓은 부분으로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일러 위암이라 하며, 위암의 대부분은 위선암(胃腺癌)으로서 위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합니다.
- 대장암: 대장은 맹장, 결장[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상(S狀)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이 대장암입니다.
- 유방암: 유방은 기름샘이 변형된 피부의 한 부속 기관으로서, 유방암은 유방 밖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종양입니다.
- 전립선암: 전립선(前立腺, prostate)은 방광 바로 밑, 직장(直腸) 앞쪽에 있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전립선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腺癌, 샘세포의 암)입니다.
- 간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갈비뼈의 안쪽에 위치하며, 간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한 원발성(原發性)의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 췌장암: 이자라고도 불리는 췌장은 길이 약 15cm의 가늘고 긴 장기로서, 췌장암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덩이)입니다.
- 담낭암: 간에서 분비된 담즙(쓸개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창고를 담낭(쓸개)이라고 하는데, 담낭암은 담낭에 생기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덩이)입니다.
- 담도암: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담도(膽道)라고 하는데, 담도암은 담관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腺癌腫)이 대부분으로서 간내 담도암과 간외 담도암으로 나뉩니다.
- 신장암: 신장(콩팥)은 횡격막 아래, 척추의 좌우에 한 쌍으로 존재하는 장기로서, 신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신실질에서 발생하는 종양과 신우에서 발생하는 신우암으로 구분합니다.

> ※ 그 밖에 암의 종류, 정의, 발생부위, 예방, 진단, 치료, 생활가이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암보험에 가입할 때에 보험사별 보험상품마다 일반암이나 특수암 및 주요암의 구분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2. 암의 진단 및 치료

#### 암의 진단

##### 암의 진단

▪ 암의 확진과 진행상태의 결정 등의 진단은 의사의 진찰, 조직검사, 세포검사, 내시경검사, 암표지자검사, 영상진단검사, 핵의학검사 등 여러 검사를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의사의 진찰: 암의 진단은 의사의 진찰을 통해 증상을 상담하고 신체의 부위를 체계별로 검진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조직·세포병리검사: 암의 확진은 암조직에서 암세포를 진단하는 것으로서, 암은 하나의 기관에서도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포검사를 통해 암세포의 종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 내시경검사: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직접 관찰하면서 암의 크기, 모양, 위치를 평가하고, 동시에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암(종양)표지자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를 이용해서 몸에 암이 있는지, 암세포의 성격이 어떤지, 수술 후의 잔류암은 없는지, 그리고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진단검사: 영상진단검사는 단순방사선영상, 투시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있습니다.
- 핵의학검사: 방사능 표지물질을 정맥주사하여 종양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부위에 방사능물질이 농축되는 기전을 이용한 검사로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골스캔, 갑상선스캔 등이 있습니다.

#### 암의 치료

##### 암의 치료

▪ 암 치료의 주요 목적은 암으로 인한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회복시킴으로써 환자를 치유하는 것과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암의 치료는 크게 적극적 치료와 완화의료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방법만 사용되기도 하나,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점과 손해가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적극적 치료는 암 덩어리를 없애거나 줄이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치료로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치료,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외에 국소치료법, 호르몬요법, 광역학치료법, 레이저치료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요법, 유전자요법 등이 있습니다.

› 완화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증상을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춘 치료를 말합니다. 완화의료는 적극적 암 치료처럼 질병에 초점을 두고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통증치료, 피로치료, 재활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이 있습니다.

## 1.2. 암센터

### 1.2.1. 암센터 이용하기

**암센터**

**국립암센터**

▪ 국립암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암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보건복지부로부터 암에 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9.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10.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1. 위의 1.부터 10.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지역암센터**

▪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고 함)에 종합병원 중 1개소(다만,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를 지역암센터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

> ※ 지역암센터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국가지원프로그램-국가암관리사업 안내-지역암센터운영사업 참조].

| 지역암센터(병원) | 전화 |
|---|---|
|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병원) | 1577-7877 |
| 광주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병원) | 1899-0000 |
|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병원) | 055-750-9114 |
|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병원) | 051-240-7000 |
|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병원) | 042-280-8888 |
|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경북대병원) | 053-200-3551 |
|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병원) | 033-258-9034~7 |
|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병원) | 043-269-7710 |
|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병원) | 064-717-1488 |
|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길병원) | 1577-2299 |
| 경기지역암센터(아주대병원) | 1688-6114 |
|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병원) | 052-250-8006 |
| 충남지역암센터(단국대병원) | 1588-0063 |

### 1.3. 암 대비하기

#### 1.3.1. 암 대비하기

**암 비용 부담**

**암 비용 부담**

▪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많으므로 의료비만이 아니라,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암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한 부담을 준비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이 외에 개인적으로 암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국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에 대한 보장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암보험에 가입할 때에 과거 진료 이력이나 병력 등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의 <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및 제2조).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암 예방하기

### 2.1. 암 예방하기

#### 2.1.1. 암의 예방

**암의 예방**

**암 예방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8만 명 이상의 사람이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따라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암의 예방이 필요합니다(「암관리법」 제1조).

※ 암 예방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며, 실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 중인 암 환자의 경우도 이차적인 암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암검진**

▪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항).

**일반적인 암의 원인**

▪ 아직도 암의 많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인 암의 원인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것도 암의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 및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밝힌 암의 원인은 흡연, 만성 감염, 음식, 직업, 유전, 생식요인 및 호르몬,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등입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우리나라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호발암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 |
|---|---|
| 위암 | 식생활(짠 음식, 탄 음식, 질산염 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감염 등 |
| 폐암 | 흡연, 직업력(비소, 석면 등), 대기오염 등 |
| 간암 | 간염바이러스(B형, C형), 간경변증, 아플라톡신 오염된 농작물 등 장기 섭취 등 |
| 대장암 | 유전적 요인, 붉은 고기 및 가공육 과다 섭취, 식이섬유 섭취 부족 등 |
| 유방암 | 유전적 요인, 고지방식, 여성호르몬, 비만 등 |
| 자궁경부암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클라미디아 감염, 피임약 복용 등 |

**일반적인 증상**

▪ 암으로 인해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은 암의 종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암이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다면 징후와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암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변비처럼 장기 내강을 막아서 생기는 증상도 있고, 췌장암과 담도암처럼 담관을 막아 황달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폐암 등은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암이 신경, 혈관을 누르거나, 뼈 등으로 전이가 생긴 경우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처럼 암의 성장으로 조직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 혈변과 빈혈, 폐암은 객혈, 방광암에서는 혈뇨 등이 생기게 됩니다.

▹ 암은 또한 체중감소, 발열, 피로, 전신쇠약, 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세를 만듭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암은 여러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의 예방 수칙

#### 국민 암 예방 수칙

▪ 암은 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서 밝힌 국민 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암 예방의 날

#### 암 예방의 날

▪ 암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4조제1항).

## 2.2. 암검진 받기

### 2.2.1. 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 암검진

#### 암검진사업

▪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함)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암의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방법 | 검진 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 간암 |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 1년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검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대상

### 암검진 대상자

▪ 암검진사업의 암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3호].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암검진 대상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예정자"라고 함)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 기관 방문

#### 암검진 실시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받기

▪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 예정자에게 송부한 서류)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2항).

▹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4항).

▪ 다만,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읍·면·리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1항).

※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을 말합니다.

## 2.2.2. 암검진 비용 지원

### 암검진 비용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의 월별 보험료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암검진 비용의 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단서).

▪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단서).

▪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3항).

※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3항).

## 암검진 비용의 환수

### 암검진 비용의 환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암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제4항).

> ※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주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암 예방하기-암검진 받기-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암환자에 대한 지원

### 3.1. 의료비 지원

#### 3.1.1. 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table>
<tr><th colspan="2">지원 대상</th><th>지원 한도액</th></tr>
<tr><td rowspan="2">소아·아동암<br>환자</td><td>백혈병</td><td>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br>3,000만원</td></tr>
<tr><td>백혈병 이외의 암종</td><td>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br>2,000만원<br>(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br>3,000만원)</td></tr>
<tr><td colspan="2">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br>√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br>√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td><td>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td></tr>
</table>

※ "본인부담 진료비"란 해당 연도에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위 2. 및 3.에 해당하는 암환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 참조).

▹ 소아·아동암 환자

| | | | | | | | | | |
|---|---|---|---|---|---|---|---|---|---|
| **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 | | | | | | |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br>※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 | | | | | |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 소득 (원/월, 해당금액 이하)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12,569,218 |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151,038원씩 증가 | | | | | | | | |
| **재산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 재산 (원, 해당금액 이하) | 370,791,022 | 417,842,935 | 451,216,863 | 483,898,935 | 514,459,540 | 543,214,446 | 570,817,266 | 598,420,086 |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7,602,820원씩 증가 | | | | | | | | |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 | |
|---|---|
|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br>※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 | |
|---|---|
| 지원 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br>※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

### 등록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의2 서식)

▪ 등록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전단).

▪ 보건소장이 암환자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해당 암환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후단).

▪ 보건소장은 소아·아동암 환자(그 부양의무자를 포함)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아·아동암 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요양기관용은 같은 고시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위의 동의 서면에는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의2 서식) 및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같은 고시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릅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암환자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받아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암환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등록 신청 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암환자의 동의 서면은 위임장(「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릅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6항).

▪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7항).

▪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8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8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21-22면 참조).

- 등록신청서 1부
  -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 성인: 연 1회 제출(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 동일 암종 기존 지원자는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 생략, 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 기존 지원자가 같은 암종으로 등록 신청을 갱신하는 경우 이전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진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위임장 1부(해당자만 제출)
  - √ 환자 본인 외 신청 시, 환자 및 대리인(보호자를 포함)의 서면동의(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등)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 √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를 제외한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을 확인(열람)하여 활용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 지급대상자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 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감면**

▪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별표 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참조].

## 3.2. 재가암환자 지원

### 3.2.1. 재가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2조 및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4.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5. 불안·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재가암환자 지원 대상 등**

▪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 재가암환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 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관리 및 그 밖의 소모품 지원

**재가암환자 지원 신청방법**

▪ 재가암환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 3.3. 말기암환자 지원

### 3.3.1.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 완화의료사업의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완화의료 대상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은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완화의료 지원 내용

▪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적극적으로 통증을 관리하고 신체적 증상 조절(호흡곤란, 부종, 섬망 등)을 시행합니다.

√ 증상조절을 위하여 가족이 할 수 있는 돌봄 방법을 교육합니다.

√ 편안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 간호를 제공합니다.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안정을 위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임종 준비를 위한 가족교육과 임종돌봄을 시행합니다.

√ 사별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환자의 전신 상태,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돌봄 계획을 주기적으로 상의합니다.

√ 통증 및 신체적 증상조절, 배액관 관리와 상처, 욕창관리 등을 받습니다.

√ 투약 및 증상 관리 등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하여 교육하여 환자와 가족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증상 악화 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연계하고,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 임종돌봄을 안내합니다.

▪ 자문형 호스피스

›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와 가족은 다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자문형 호스피스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현재의 담당 주치의와 함께 증상 조절, 상담 등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궁금한 내용을 상담하고 돌봄 계획을 상의합니다.

√ 환자 상태 및 가족의 요구도에 따라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을 연계합니다.

√ 통증 및 신체적 증상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와 함께 증상 조절을 돕습니다.

√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파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합니다.

√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완화의료 신청**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은 중앙호스피스센터(https://hosp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 3.4. 그 밖의 지원

### 3.4.1. 생활비 등 지원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제1항).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1항·제2항).

▪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 ※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6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 의료사회복지사는 생활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돕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심리사회적 상담: 심리사회적 문제의 파악을 통한 정서 심리적 지지 상담
- 경제적 문제 해결 지원: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치료비 마련 문제 해결 도움
- 지역사회자원 연결: 무료간병인 연계, 봉사자 파견, 쉼터 연계 등
-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 퇴원 계획 상담
- 장기이식상담: 장기기증순수성평가 상담, 장기기증 상담
- 자원봉사관리: 봉사자 교육, 배치, 파견 등의 관리

### 생활 지원 신청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 경제적 문제로 상담받는 경우 진단서,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신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후원받기

### 후원받기

▪ 후원을 받으려는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사회복지사와 전반적인 치료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후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 기관명 | 후원내용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 생명나눔실천본부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 어린이재단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 한국백혈병소아청소년암협회 |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직·간접 치료비, 이식비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
| 한국소아청소년암재단 |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
| 한국심장재단 | 이식비 지원 |
| 한국유방건강재단 | 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

※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의 <퇴직급여 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4.2. 간병휴직 등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 가족돌봄휴직 사용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후단).

#### 근로자의 병가 사용

▪ 취업규칙 등 직장 내부의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간병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 공무원의 간병휴직 사용

▪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본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

#### 공무원의 병가 사용

▪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전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다만,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 본문).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단서).

> ※ 지방공무원의 병가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유사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58조제2호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제7호).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신청 방법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

> ※ 그 밖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